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

1989. 12. 1 제정
1992. 12. 16 개정
1999. 12. 15 개정
2001. 12. 13 개정
2004. 1. 27 개정
2007. 9. 18 개정
2009. 9. 22 개정
2013. 12. 4 개정
2014. 6. 17 개정
2015. 11. 6 개정
2016. 10. 5 개정
2018. 11. 2 개정
2024. 1. 2 개정
2026. 5. 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회칙은 서울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외환시장 참가기관) 이 회칙에서 외환시장 참가기관이라 함은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국환중개회사 등을 의미한다.

제 3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The Seoul Code of Conduct: Guidelines for

Foreign Exchange trading activities)의 제정 및 개정

2. 외환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 및 연구
3. 외환시장의 거래관행에 관한 논의 및 연구
4. 행동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중재 및 제재
5. KOREA FOREX CLUB과의 유기적 협조
6.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
7. '운영위원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신설 2013. 12. 4.>
8. 기타 외환시장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위 원

제 4 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그룹별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 중 협의회 구성원 조건을 충족한 기관의 외환시장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부장급(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이라 한다)의 경우 지점장급) 책임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즉시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2., 2013. 12. 4., 2014. 6. 17., 2024. 1. 2>

1. 국내은행
2. 외은지점
3. 기타 금융기관
4. 한국은행
5. 외국환평형기금
6. KOREA FOREX CLUB 회장
7. 외국환중개회사 대표 3사
8.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② 회장은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무는 제①항 제7호 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준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구성원 신규가입 및 퇴출 등) ① 제4조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⑥항에 따른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협의회 구성원에서 자동 퇴출된다.

<개정 2016. 10. 5.>

1. 원/달러 및 원/위안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현물환 및 외환스왑을 각각 50%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거래량이 시장점유율 0.1% 미만 <개정 2015. 11. 6., 2016. 10. 5., 2026. 5. 8.>
2. 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율 50% 미만 <개정 2015. 11. 6.>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①항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5.>

1. 제4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국내은행 중 지방은행 : 지방은행 중 거래량 상위 2개 기관 <개정 2016. 10. 5.>
2. 제4조 제①항 제3호에 따른 기타 금융기관 : 기타 금융기관 중 거래량 상위 1개 기관 <신설 2016. 10. 5.>
3. 제③항 제3호에 따라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한 기관 <개정 2016. 10. 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협의회 승인을 거쳐 신규 구성원으로 진입한다. <개정 2016. 10. 5., 2026. 5. 8.>

1. 제4조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국내은행, 외은지점과 기타 금융기관 : 원/달러 및 원/위안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량 시장점유율 0.1% 이상 <개정 2015. 11. 6., 2016. 10. 5., 2026. 5. 8.>

2. 현물환 중개 인가기관 이외의 중개사 중 외환스왑거래 중개점유율 5% 이상 (매년 '가나다'순번제로 2개사를 구성원으로 인정) <개정 2015. 11. 6., 2026. 5. 8.>
3.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신설 2015. 11. 6.>

- ④ 현물환 중개 인가기관 2개사(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는 구성원 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13. 12. 4.>
- ⑤ 거래량 산정기준일자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선정일의 직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0. 5.>
- ⑥ 구성원 선정은 매년초에 실시하며, 자격유지 기간은 당해연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③항 제3호에 따라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한 기관의 경우는 협의회 승인이 있는 때부터 신규 구성원으로 진입하며, 자격유지기간은 신규 구성원으로 진입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0. 5.>

제 6 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제 7 조(총무의 직무) 총무는 회의 의사록 작성 및 관리, 경비의 집행 및 관리,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운 영

제 1 절 정기 및 임시 회의

제 8 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소집하며,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이

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3. 12. 4.>

- ② 회의 안건은 각 위원이 회장을 통하여 부의한다. 필요한 경우 안건을 부의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2009. 9. 22.>
- ④ 부의된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의 신규 가입과 제적, 회칙 개정의 건은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9. 22.>
- ⑤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9. 22.>

제 2 절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9 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6. 17.>

- ② 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4. 1. 2.>
 - 1. 회장
 - 2. 총무
 - 3. 한국은행 소속 위원
 - 4. 외국환평형기금 소속 위원
 - 5. KOREA FOREX CLUB 회장
 - 6. 제4조 제①항 제1호에 속하는 기관 중 제5조 제①항 및 제⑤항에서 정한 거래량 산정기준 상위 2개 기관 소속 위원. 다만, 회장 또는 KOREA FOREX CLUB 회장과 중복되는 경우는 차상위 기관으로 정한다.

7. 제4조 제①항 제2호에 속하는 기관 중 제5조 제①항 및 제⑤항에서 정한 거래량 산정기준 상위 3개 기관 소속 위원
8. 전임 회장 <신설 2015. 11. 6.>
9. 전임 총무 <신설 2015. 11. 6.>
10. 회장,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소속 위원 <신설 2024. 1. 2.>

③ 운영위원회는 제 3 조 각호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직무로 한다. <신설 2014. 6. 17.>

제10조(전문위원회) ① 협의회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 위원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4.>

②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문위원회의 사전 연구 및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7.>

제 3 절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제 11 조(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① 협의회는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5조 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산하 기구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둔다. <제정 2024. 1. 2>

② 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기관 소속 위원은 제5조 제⑥항에 따른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에서 자동 퇴출되며 매년초 제5호에 따른 기관 소속 위원이 신규 자율준수 위원으로 진입한다. <제정 2024. 1. 2>

1. 제9조 제②항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위원
2. 제4조 제①항 제2호에 속하는 기관 중 본점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유럽 지역, 및 미주 지역에 속하는 기관들 중 각 지역별로 거래

량 상위 1개 기관(총 3개 기관)의 소속 위원. 다만, 동 기관과 제1호 위원이 속한 외은지점이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 제②항 제1호에 속하는 기관 중 거래량 상위 1개 기관 소속 위원
4. 제5조 제②항 제2호에 속하는 기관 소속 위원
5. 제5조 제③항 제3호에 속하는 기관 소속 위원
6.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소속 위원으로 준위원을 포함한다.

제 12 조(기능)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정 2024. 1. 2>

1.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The Seoul Code of Conduct: Guidelines for Foreign Exchange trading activities)의 점검 및 개정건의
2.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연구 및 논의
3.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협의회 구성원 대상 교육
4.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제 4 장 재 정 및 보 고

제 13조(경비 조달 및 보고)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참가기관이 부담하며, 경비분담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1. 2.>

1. 협의회는 연회비로 충당하며,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참가기관은 매년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 11. 2.>
3. 협의회는 연간 사업계획(세미나 및 협의회 업무 관련 회의 참석 등을 포함한다.)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경비에서 집행한다.

<신설 2018. 11. 2.>

② 총무는 매년 1회 이상 경비 조달 및 집행 결과를 협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9. 12. 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1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1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9.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7.)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 6.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6.)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 11.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5.)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6. 10.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8. 1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1.)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4.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5. 8.)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6. 5. 8부터 시행한다.